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49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김 건  
이헌승 · 추경호 · 최수진  
고동진 · 김상훈 · 주호영  
박덕흠 · 이인선 · 강대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인광고의 거짓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절차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 및 제38

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